

중국 회사법 개정내용과 시사점(요약)

북경지부(2014. 3. 24)

* 중국 정부가 기업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을 골자로 하여 개정된 회사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, 중국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외자기업이 참고해야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.

1. 개정 배경

□ 창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

- 기본적으로 창업비용이 크게 줄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
-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제고될 전망
 - 둔화된 투자증가율(특히 침체된 민간투자)과 높은 청년실업률 등을 한꺼번에 개선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됨

□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여 민간의 창의성을 존중

- 정부의 감독방식을 직접 통제에서 간접통제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규제를 크게 줄인다는 최근의 중국 정부 정책방향을 시현함

2. 주요 내용

□ 납입자본금이 아니라, 회사 정관에 명시된 수권자본금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‘수권자본금제’로 변경

- 향후 등록자본금은 실제 납입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정관에서 최대한도를 정

해놓고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하게 됨에 따라, 회사 설립이 쉽고 한도 내 자본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

<참고> 수권자본금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이사회에서 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 기재됨. 수권자본제도 아래에서는 자본금의 최대한도를 정해 놓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분할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릴 수 있으므로 회사설립이 쉽고 자본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음. 반면에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어 채권자 보호도 소홀해진다는 단점이 있음.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실제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으로 확정된 것이 납입자본금(paid-in capital)임

○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등록자본금 최초 납입 시 최소금액 및 납입기간에 관한 제한규정은 폐지되고, 주주출자액과 실제 납입자본금 등이 회사 등기항목에서 제외됨. 또한 과거 회사 설립 시 등기기관에 제출하던 출자감사보고서 또한 필요서류 목록에서 삭제됨. 단, 주식유한회사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경우 출자감사보고서는 여전히 회사 등기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필요서류임

□ **최저 등록자본규정들은 이번 개정법에서는 모두 삭제되어 향후 이론적으로 ‘1위안 회사’의 설립이 가능**

○ 그동안 유한책임회사는 3만 위안, 1인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는 각각 10만 위안과 500만 위안의 최저 자본금을 요구했음

□ **구 회사법에서 회사 설립 시 등록자본금에 대한 발기인의 현금출자 의무비율이 최소 30%로 규정되었으나, 이 조항 역시 개정법에서는 삭제됨**

○ 현물(설비), 기술, 토지사용권, 지적재산권 등을 자본금으로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

〈표〉 회사법 개정내용 비교

구 회사법	신 회사법
<p>제7조제2항 영업집조 표시 내용 : 회사의 명칭, 주소, 등록 자본, 실제 납입자본, 경영범위, 법정대표 성명 등</p>	<p>제7조제2항 실제 납입자본 삭제</p>
<p>제23조 유한책임회사 설립 요건 1. 주주의 수 2. 법정자본의 최저액 충족 3. 회사정관 제정 4. 회사명칭과 조직 5. 회사 주소</p>	<p>제23조 최저 자본금 규정 삭제</p>
<p>제26조 - 최초로 출자금액 : 등록자본금의 20% 이상 - 납입기간 : 나머지 부분은 주주가 회사설립 일로부터 2년 이내에 납입(투자회사의 경우 5년 이내에 납입) -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금의 최저 한도액 : 3만 위안</p>	<p>제26조 최초 납입금액과 납입기간, 그리고 최초 한도액 규정 삭제</p>
<p>제29조 - 출자금을 납입한 후 법에 따라 설립된 검증기관으로부터 출자감사를 받고, 해당 증명서를 교부 받아야함</p>	<p>삭제</p>
<p>제33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주주명부에 의거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출자액을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하여야함</p>	<p>제32조 등기기관에 등기할 내용에서 출자액 삭제</p>
<p>제59조제1항 1인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 최저 한도액은 인민폐 10만 위안이며 주주는 회사정관이 규정한 출자액 전액을 일시불로 납입하여야 함</p>	<p>삭제</p>
<p>제81조 - 회사 전체 발기인의 최초 출자액은 등록자본금의 100분의 20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, 그 나머지 부분은 발기인이 회사 설립일로부터 2년 내에 완납해야 함 - 주식유한회사 등록자본금의 최저 한도액은 인민폐 500만 위안임(법률 및 행정법규에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자본금 최저 한도액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에 따름)</p>	<p>제80조 모두 삭제(법률 및 행정 법규에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자본금 최저 한도액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에 따름)</p>
<p>제84조 - 일시불일 경우 출자금 전액을 즉시 납부해야 하며 분할납부하는 경우 1회분 출자금을 즉시 납부해야 함 - 법정 출자검증기관이 발급한 출자감사보고서, 법률,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설립등기를 신청</p>	<p>제83조 - 즉시 납부규정 및 1회 출자금 규정 삭제 - 법률,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문서를 제출하여 설립등기를 신청</p>

□ 대외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과 편리성 증대

- 회사 등기기관은 등기 및 관련 정보를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영업집조(영업허가증)도 전자제도로 개편되었음
- 기업연도 검사제도를 폐지하고, 회사의 연도보고서를 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방향으로 변경

3. 결론 및 시사점

□ 중국 회사법의 개정으로 소규모 민간 창업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

- 한국도 2009년에 최저자본금을 5천만원에서 100원으로 사실상 자본금 규정을 폐지하여 소규모 창업이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자본금제 폐지는 비슷한 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됨
- 미국도 금융업을 제외하고는 최저 자본금제도를 폐지하여 HP, 구글, 아마존 등이 창고나 주차장에서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창조경제(벤처경제)를 견인함

□ 수권자본금제 도입과 각종 규제완화로 신속한 회사 설립이 가능

- 자본금 조달을 용이하게 한 것은 경영환경 변화에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조치임

□ 회사법 및 관련 행정법규의 개정은 회사의 자본금제도 개혁을 겨냥한 것으로 외상투자기업 설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

- 최저자본금제도는 전면적으로 폐지되므로 향후 일반적 외상투자기업을 설립 시의 최저등록자본금 제한 또한 폐지되는 것임. 단, 타 법률, 행정법규

에서 외상투자를 제한하기 위하여 최저등록자본금의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 규정이 우선함

- 외상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로 하여금 자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할 가능성은 적지만, 최소한 기존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보임(기존에도 회사법에서 요구한 최저자본금보다 높은 수준의 자본금을 요구한 사례가 있음)

□ 현금출자 의무비율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자본금 규제가 사실상 없어짐에 따라 향후 다양한 형태의 외상투자 출자형태가 가능할 전망

- o 하이테크 기업과 벤처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인터넷 관련분야서 1인 회사 등 소규모 합작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

□ 향후 중국 거래처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 필요

- o 중국의 법인형태의 기업수가 9천만 개를 넘어 1억 개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자본금 규제의 철폐로 기업의 난립이라는 부작용도 우려되어 거래전에 철저한 신용조사가 필요